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휴대전화 기상번호 제공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36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0. 4.
3. 회 부 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때,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음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고지의무를 해태하여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261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이나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④ ~ ⑫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57조의8제6항1)(제108조의2 제5항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선거여론조사를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일 현재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8(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⑥ 이동통신사업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이나 여론수렴 등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제57조의8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 법 제57조의8제6항에 따른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전송, 우편물 발송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함.

< 휴대전화 가상번호 고지기간 및 제공기간 현황 >

고지기간	거부표시기간	고지 주기	해당선거
`17.2.25. ~ `17.3.6.	`17.3.7. ~ `17.3.11.	391일	2017. 5. 9. (19대 대선)
`18.1.13. ~ `18.2.12.	`18.2.13. ~ `18.3.4.	309일	2018. 6. 13. (제7회 지선)
`19.11.17. ~ `19.12.16. 【`20.1.18.~`20.1.27.】	`19.12.17. ~ `20.1.5. 【`20.1.28.~`20.2.1.】	624일	2020. 4. 15. (제21대 총선)
`21.6.11. ~ `21.7.12.	`21.7.13. ~ `21.8.2.	524일	2022. 3. 9. (제20대 대선)
`21.12.31. ~ `22.1.31.	`22.2.1. ~ `22.2.21.	152일	2022. 6. 1. (제8회 지선)

※ 【 】 안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만18세 이용자 재고지 및 거부표시기간

※ 고지주기는 직전선거의 거부표시기간 마감일부터 당해선거 고지기간 시작일까지 기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 통신사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본인의 가상번호 제공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이용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고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2017년 이후 제공사실 고지건수(비율) 등 현황 >

(단위: 명, 건)

연 도	이동통신사업자	대상자수	고지건수 (비율)	거부건수 (비율)	비고
2017	계	51,073,052	51,073,052건 (100%)	6,378건 (0.01%)	
	SKT	26,753,000	26,753,000건 (100%)	1,821건 (0.01%)	홈페이지 게시 병행
	KT	13,750,914	13,750,914건 (100%)	173건 (0.00%)	홈페이지 게시 병행
	LGU+	10,569,138	10,569,138건 (100%)	4,384건 (0.04%)	홈페이지 게시 병행
2018	계	52,094,894	52,094,894건 (100%)	5,886건 (0.01%)	
	SKT	27,382,000	27,382,000건 (100%)	3,602건 (0.01%)	홈페이지 게시 병행
	KT	13,863,117	13,863,117건 (100%)	534건 (0.00%)	홈페이지 게시 병행
	LGU+	10,849,777	10,849,777건 (100%)	1,750건 (0.02%)	홈페이지 게시 병행
2019	계	48,759,560	48,759,560건 (100%)	4,958건 (0.01%)	
	SKT	24,972,689	24,972,689건 (100%)	2,938건 (0.01%)	홈페이지 게시 병행
	KT	14,132,756	14,132,756건 (100%)	1,212건 (0.01%)	홈페이지 게시 병행
	LGU+	9,654,115	9,654,115건 (100%)	808건 (0.01%)	홈페이지 게시 병행

※ 거부건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외한 건수는 해당없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

당 등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행법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³⁾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태료의 부과액수도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나, 이동통신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지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개 정 안	수정의견
1의2. 제57조의8제6항(제108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u>위반하여</u>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의2. ----- ----- ----- <u>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u> ----- ----- ----- -----

3)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9조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여부는 국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 추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